

잔존가보장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서

금융감독원 심사 승인일 : 2015. 3. 27

할부금융 계약자(이하 "갑"이라고 함)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원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잔존가보장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이라고 함)를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1조 서비스내용

- 잔존가치보장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갑"이 "원계약"의 약정기간 만료 전 정해진 시한까지 "원계약"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하 "대상차량"이라고 함)을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병"이라 함)에게 인도하고, 대상 차량이 본 "추가약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갑"의 선택에 의하여 본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로부터 대상 차량의 만기시 잔존가치 금액(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예상잔존가치 금액에서 본 "추가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이하 "만기 시 잔존가치금액"이라고 함)을 보장받고, 이를 "원계약"에서 약정한 유예금(이하 "유예금"이라고 함)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본 "추가약정서"에 따른 체결 당시 예상되는 예상잔존가치금액 및 연간약정운행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잔존가치금액	원
연간약정운행거리	Km/년

제2조 서비스 진행절차

-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고객의 대상차량 매각의사 표시 → 대상차량 인도 → 대상차량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고객 확인 → 감가금액 및 초과운행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시) → 장애사유로 보완완료 → 경매 → 소유권이전 → 유예금 정산

제3조 매각의사의 표시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원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대상차량에 대한 매각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갑"의 매각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병"의 상호, 주소, 연락처 및 담당자명을 이메일 또는 LMS로 안내합니다.

제4조 대상차량의 인도

- "갑"은 "원계약"의 만기일 18시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상차량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 매각 후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상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대상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자동차세, 설정/압류 해지비용, 범칙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 매각과정에서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조 매각대상차량 평가 및 고객확인

- 감가금액의 산정
 - "을"은 "갑"이 제4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대상차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을"은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갑"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 결과 대상차량에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감가금액의 합"을 안내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감가금액의 합"이란 "을"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차량평가 및 감가 산정 기준"에 따른 개별 감가평가액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 반납 시 교체 또는 수리비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 회복 및 감가합니다.
 - 반납이전 이용자가 자비로 교체, 수리 시 감가할만 반영하며, 차량의 가치 감가금액은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가치) * 감가율로 합니다.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가치)는 "반환차량의 출고 당시 최초 차량 가격 * 지행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발표 경과 연수 별 잔존가치율"을 말합니다.
 - "을"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차량 감가 기준 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성능, 상태검사 결과 기준으로 사고에 의한 차체 절단 및 골극, 교란, 차량 부위 탈 부착의 수리 등을 포함합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 "갑"의 상호 합의에 정한 별도의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을"은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갑"은 지정된 기일까지 "감가금액의 합"을 "을"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6조 초과운행부담금

- "갑"이 본 "추가약정서"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간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하여 대상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갑"은 본 항 제2조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을"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초과운행거리 = 차량 인도시점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거리)

초과운행거리(합)	10,000Km 이하	10,001Km ~ 20,000Km	20,001Km ~ 40,000Km	40,000Km 초과
초과운행부담금 (Km 당)	100원	200원	500원	1,000 원

예) 할부기간3년 및 연간 20,000Km 운행거리 약정 후 만기 차량 인도 시 75,000Km운행한 경우, 15,000Km(=75,000Km - 20,000Km*3)가 초과 운행거리가 되고, 초과운행부담금은 2,000,000원 (= 10,000Km * 100원 + 5,000Km * 200원) 된다.

제6조 매각의사의 철회

- "갑"이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병"이 진행되는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는 유찰되며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갑"은 본조에 따라 "원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금" 및/또는 이자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갑"이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5조의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매각의사를 철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제4조 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장소에서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 "갑"이 추후 "병"이 진행되는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7조의 경매가액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매각의사를 철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제4조 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장소에서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 "갑"이 지정된 기일(매각대상차량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경매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매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갑"은 대상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아래 금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계약"상 만기일 이전에 매각의사를 철회하고 대상차량을 인수하면서 유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자가 부과되는 않으며 "원계약"에서 정한 만기일까지 "원계약상"의 유예금(이하 "유예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 유예금
- 이자금액

$$\text{이자금액} = (\text{유예금}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만기일} \text{로부터 유예금 납입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원계약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이 제5조에 규정한 매각대상차량평가를 위해 제3의 장소로 이동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4조에 따른 차량인도시점의 운행거리와 본 조에 따른 매각의사 철회시 인수시점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갑"은 철회시점까지 발생한 매각 비용(주차비, 자동차 검사비, 탁송료, 경매관련 수수료, 경매관련 낙찰 수수료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 대상차량의 매각 및 정산

- 매각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 가격이 확정 되면 "병"은 갑에게 최종 낙찰 가격을 즉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의 경매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매가액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의사를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경매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갑"은 경매가액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갑"이 지정된 기일(경매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병"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대상차량이 경매되어 최종 매수자(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갑"과 "을"은 "매각대금 등의 합"에서 "원계약"상의 유예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 * "매각대금 등의 합"이라 함은 대상차량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제5조에 의한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매각대금 등의 합"이 약정잔존가치금액 보다 적은 경우
 "만기시 잔존가치 금액" 만큼 "원 계약"상 유예금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즉 차량의 매각 대금은 전액 "원 계약"상 유예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충당 후 남은 나머지 유예금도 "갑"이 제5조에 따라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 운행부담금"을 "을"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 "매각대금 등의 합"이 약정잔존가치금액 보다 큰 경우
 "갑"은 "병"으로부터 "매각대금 등의 합"과 약정잔존가치금액의 차액 만큼을 지급받습니다.

제8조 장애사유로 인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경매 시작전까지 지체없이 그 장애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원계약"에 따른 할부금, 이자, 연체 이자 등 "원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대상 차량에 미납된 공과금(제세포함), 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가압류, 압류, 등 차량 매매에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
- "갑"이 제 5조에 따른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 본 "추가약정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서비스의 거절

차량 매각 신청시 대상차량은 즉시 운행가능 상태이어야 하며 차량에 추가적인 장비를 장착한 경우,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한(만기일 18시)까지 원상대로 회복한 후 인도하여야 합니다.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유예금을 직접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원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 이후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또는 "원계약"의 만기일 18시를 경과하여 대상차량을 "병"에게 인도하는 경우
-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한(만기일 18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을 인도하는 경우
- 인도일 현재 중도해지, 기한이상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해 "원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대상차량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중개 포함)
-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등을 고의로 은폐, 조작한 경우
-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잔존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 대상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사유 : 저당권설정,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

제10조 양도 및 이전의 금지

"갑"은 본 "추가약정서"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추가약정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본 "추가약정서"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잔존가치보장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갑" : _____ (인)

"을"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